

議案檢討報告書

1. 發議 또는 提出者 : 金光照議員 外 11人
2. 件 名 : 大田廣域市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
條例案
3. 案 件 要 旨 : 別 添 參 照
4. 檢 討 意 見 : 別 添 參 照

위 議案에 대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6年 12月 23日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鎮 鎬



大田廣域市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案

檢 討 報 告 書

1996年 12月 23日

文 教 社 會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大田廣域市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條例案

檢 討 報 告

이 조례안은 1996년 12월 20일 김광희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提 案 理 由

-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등을 통하여 환경폐기물로부터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 나아가 재활용제품 생산을 통한 제품의 우선구매 및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폐기물의 처리를 원활히 하는데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主 要 骨 子

- 가. 적용범위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에 규정한 업종 및 제품과 재활용 산업을 대상으로 함 (안 제2조)

나. 재활용 제품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는 건설폐재 배출시 일정규모의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토록 함. (안 제3조)

다. 재활용 제품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시장·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종합재활용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타 제품에 우선하여 구매 사용토록 함. (안 제5조)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센터에 위탁 처리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제품 판매가격을 감면토록 함. (안 제6조)

3. 檢 討 意 見

- 동조례안은 1992년 12월 28일 법률제 4538호로 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즉,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대명제아래, 우리시가 한밭개발공사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재활용

센터에서 생산된 재활용품의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음.

- 그리고 동법률과 그 시행령등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처분등은 5개 자치구별로 1995년부터 조례를 재정하여 기 운영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사항으로 금번 시조례의 제정은 동법률에서 천명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장과 각 자치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동조례안의 내용은 선언적 의미보다는 시행과정에 있어서 시와 구의 각 공사발주부서의 실질적인 실천이 더욱 중요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 기타 동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